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0129

발의연월일 : 2014. 4. 9.

발의자 : 이찬열 · 강기정 · 조정식 · 김현미 · 유대운

김태년 · 김 현 · 김성곤 · 배재정 · 강창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말 기준 전국의 대학 재학생 수는 178만 명으로 이 중 22.8%에 해당하는 40만 5,000명만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도권외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16.7%로 전국 평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09년 이후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학생 주거환경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학생의 주거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환경 및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생의 주거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학교의 장, 그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3조의2(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p> <p>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환경 및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생의 주거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학교의 장,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